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



수신자 정릉3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
 (경유) 서울시 성북구 보극로 20길 18. 대연빌딩 2층 (정릉4동 260-29)
 제목 성북구 휘장 사용 제한 안내

1. 성북구는 성북구의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휘장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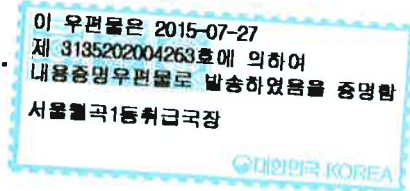
	<p><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></p> <p>제6조(사용제한) 휘장의 도안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. [전문개정 2014.4.24]</p>
--	--

2. 사용하고 계신 명함과 대봉투에 성북구의 휘장을 삽입하는 것은 성북구의 휘장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에 해당되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 6조(사용제한)에 위반되는 것입니다.

3. 서울시 성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성북구 휘장의 사용제한을 위반할 경우 상표법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상표법 제93조는 상표법상 침해행위에 해당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, 상표법 제 97조의2항은 그 침해행위로 생긴 상표 또는 상품과 포장의 제작용구는 모두 몰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4. 성북구는 이러한 관련 법조항에 따라 성북구휘장의 무단사용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, 성북구의 휘장이 무단으로 사용된 명함과 봉투 등을 폐기하여 주시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- 붙임 1. 성북구 휘장이 들어간 명함 1부.
- 2. 성북구 휘장이 들어간 대봉투 1부. 끝.





주무관 김나연 언론홍보담당 이대현 홍보전산과장 07/22 代이대현

협조자

시행 홍보전산과-27064 (2015.7.23.) 접수 ()
우 136-706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http://www.seongbuk.go.kr/
전화 02-2241-2104 /전송 02-916-8924 / 대시민공개